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후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55 발의연월일: 2020. 9. 23.

발 의 자:윤후덕·김두관·기동민

김경협 · 홍익표 · 김수흥

양향자 • 이광재 • 정일영

우원식 • 권인숙 • 김정호

전혜숙 • 이원욱 • 이형석

송갑석 · 서삼석 · 임오경

박 정・양경숙 의원

(2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0년 8월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.5 단계가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이동성 및 경제활동이 크게 위 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. 특히 대면 서비스업종에 영향이 집중되면 서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해 재정·세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긴급 피해지원을 추진할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음.

특히 영세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은 상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이 과 중함을 호소하고 있음.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생하기 위해 임대 료를 인하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, 임대료의 자발적 인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지원(인하된 임대료의 50%를 임대인의 소득세·법인세에서 공제)은 2020년 6월로 적용기한이 만료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상가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96조의3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6조의3제1항 중 "2020년 6월 30일"을 "2020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아니한다"를 "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 징할 수 있다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착한임대인 세제지원 관련 적용례)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6조의3(상가임대료를 인하한	제96조의3(상가임대료를 인하한
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)	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)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	①
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	
임대료를 임차인(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)으	
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<u>202</u>	<u>202</u>
<u>0년 6월 30일</u> 까지(이하 이 조에	0년 12월 31일
서 "공제기간"이라 한다) 인하	
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	
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	
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	
다.	
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	②
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	
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	
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	
제를 적용하지 <u>아니한다</u> .	<u></u> 아니하거나 이
	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
	<u>있다</u> .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